

2021 지게차운전기능사(16절) **건설기계관리법 개정부분** [21.7.1]

| 페이지 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| 오  | 정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73  | 02. 건설기계사업                  | 대여업, 정비업, 매매업, 폐기업 등이 있으며,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 | 대여업, 정비업, 매매업, <b>해체재활용업</b> 등이 있으며,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  |
|     | 04. 등록사항 변경신고 교체            |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)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등록을 한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시·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 |   |
| 75  | ㉒ 정기검사 신청기간 및 검사기간 산정       | ① 정기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신청한다.  | ① 정기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<b>31일</b> 이내에 신청한다.  |
|     | ㉓ 정비명령                      | 정비명령기간은 6개월 이내   | 정비명령기간은 1개월 이내  |
| 76  | 12. 건설기계 조종사면허<br>① 면허취소 사유 | ④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| ④ 건설기계의 조종 중 <b>고의로 인명피해(사망·중상·경상 등)를 입힌 경우</b><br><b>㉔, ㉕, ㉖ 삭제</b>  |
|     | ② 면허정지 기간                   | ③ 혈중 알코올 농도 0.05% 이상 0.1% 미만   | ③ 혈중 알코올 농도 <b>0.03% 이상 0.08% 미만</b>  |
|     | 10. 벌칙                      | ㉓ 100만 원 이하의 벌금 <b>①, ②, ③ 삭제</b><br><b>아래 내용으로 교체</b><br>㉓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<br>①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<br>② 등록번호표를 부착·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<br>③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<br>④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79  | 출제예상문제<br>11번 교체            | 11.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?<br>①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다.<br>② 등록이전신고를 한다.<br>③ 건설기계소재지 변동신고를 한다.<br>④ 등록지의 변경 시에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는다.<br>▶해설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)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답 : ②] |   |
| 82  | 29번 보기 수정                   | ③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신청한다.<br>▶해설◀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신청한다.  | ③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<b>31일</b> 이내에 신청한다.<br>▶해설◀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<b>31일</b> 이내에 신청한다. |

| 페이지 | 항 목            | 오  | 정  |
|-----|----------------|--|--|
| 85  | 47번 보기 수정      | ④ 6개월 이내<br>▶해설◀ 6개월 이내  | ④ <b>1개월</b> 이내<br>▶해설◀ <b>1개월</b> 이내  |
| 86  | 57번 문제 교체      | 57.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은 누구에게 하는가?<br>① 국토교통부장관<br>② 시·도지사<br>③ 행정안전부장관<br>④ 읍·면·동장<br>▶해설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은 시·도지사에게 한다. [답 : ②]   |  |
| 86  | 58번 문제 교체      | 58.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은 누가 하는가?<br>① 국토교통부장관<br>② 시·도지사<br>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<br>④ 고용노동부장관<br>▶해설◀ 건설기계를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답 : ①]  |  |
| 87  | 61, 63, 69번 보기 | 폐기업<br>▶해설◀ 폐기업  | <b>해체재활용업</b><br>▶해설◀ <b>해체재활용업</b>  |
| 89  | 73번 문제 및 답 수정  | 건설기계의 조종 중에 과실로 사망 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때 조종사면허 처분기준은?<br>[답 : ③]  | 건설기계의 조종 중에 <b>고의로 사망의</b> 인명피해를 입힌 때 조종사면허 처분기준은?<br>[답 : ①]<br>▶해설◀ <b>모두 삭제</b> |
| 89  | 75번 보기 수정      | ① 건설기계의 조종 중에 과실로 사망 1명의 경상을 입힌 때  | ① 건설기계의 조종 중에 <b>고의로 경상을</b> 입힌 때  |
| 89  | 76번 문제 및 해설 교체 | 76. 술에 취한 상태(혈중 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08% 미만)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기준은?<br>① 면허효력정지 20일<br>② 면허효력정지 30일<br>③ 면허효력정지 40일<br>④ 면허효력정지 60일<br>▶해설◀ 술에 취한 상태(혈중 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08% 미만)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면허효력정지 60일이다. [답 : ④] |  |
| 84  | 85번 문제 교체      | 85.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?<br>① 50만 원 이하<br>② 100만 원 이하<br>③ 300만 원 이하<br>④ 1000만 원 이하<br>▶해설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[답 : ②]      |  |

[모의고사]

| 페이지 | 항 목          | 오  | 정   |
|-----|--------------|--|---|
| 221 | 문제 42번       | ③ 건설기계 폐기업자<br>▶해설◀ 건설기계 폐기 인수증명서는 건설기계 폐기업자가 교부한다.                | ③ 건설기계 <b>해체재활용업자</b><br>▶해설◀ 건설기계 폐기 인수증명서는 건설기계 <b>해체재활용업자</b> 가 교부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|
| 237 | 문제 41번 보기 수정 | 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때<br>③ 건설기계 조종 중 과실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때     | ① <b>거짓이나 그 밖의</b>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<b>받은 경우</b><br>③ 건설기계 조종 중 <b>일천만원 이상 재산 피해를 입힌 때</b> |
| 246 | 문제 48번       | ① 건설기계 조종 중에 고의로 1명에게 경상을 입혔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건설기계 조종 중에 <b>고의로 중상을</b> 입혔을 때   |
| 247 | 53번 문제 수정    | 건설기계 조종 중에 고의로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때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면허의 처분기준은?<br>[답 : ②] | 건설기계 조종 중에 <b>고의로 중상을</b> 입힌 때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면허의 처분기준은?<br>[답 : ④]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57번 보기 수정    | ② 건설기계폐기업<br>[해설] 건설기계폐기업  | ② 건설기계 <b>해체재활용업</b><br>[해설] 건설기계 <b>해체재활용업</b>   |